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운빌딩 4층 전화 796-8364 패스 79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 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님

발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공보담당: 김정선: 796-8364)

제목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보도자료

날짜 1996. 1. 24. (총10장)

보 도 자 료

맑은 사회만들기 캠페인 제도개선분야 1차토론회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관한 대토론회

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1. 바른 언론을 위해 힘쓰고 계신 귀사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2. 최근 몇 년동안 끊임없이 발생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사건 사고들로 인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깊은 불신과 절망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사회에는 돈세탁·뇌물수수·행정정보의 사적이용·온갖 정치비리·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 등 각종 부정부패를 통제할 강력하고도 종합적인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흡한 법이나마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수사기관·사법기관은 아직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함께 레신문에서는 「맑은사회만들기」 제도개혁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현행 부정부패방지 법-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맑은 사회를 위한 부패방지기본법의 입법안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부패방지기본법은 필요하다면 검찰직무까지도 조사·감찰하고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강력한 부패통제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4. 토론회와 관련된 구체적 진행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토론회 발제문(요약문)은 별첨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본 토론회를 시작으로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몇가지의 사업계획도 첨부합니다.

*발제문 전문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공보담당 김정선 796-8364)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오재식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2가 404번지 기원빌딩 4층 전화 736-8364 팩스 733-4745 천리안·하이텔·나우콤/PSPD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공동주최 참여연대 · 한겨레신문

일 시 1996년 1월 24일 오후 1시~5시

장 소 한국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 회 李銀榮 교수 (외국어대 법학교수, 부정부패방지위원)

인사말 金昌國 변호사 (맑은사회만들기본부장, 전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발제1.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尹泰範 박사 (행정학박사)

발제2. 부패방지법(안)

朴元淳 변호사(참여연대사무처장, 맑은사회만들기 본부실행위원장)

토론자

- ▷ 김사원 孫承泰(경영학 박사, 김사원 법무조정국장)
- ▷ 법제처 李鍾永(행정학 박사, 법제연구원)
- ▷ 재 계 李漢舊(대우경제연구소장)
- ▷ 학 계 河泰權(충북대 행정학)
- ▷ 정 계 朴範珍(국회의원 신한국당)
中溪輪(국회의원 새정치국민회의)

■ 별첨자료 ■

부패방지법(안)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정책사업단(발표자:박원순)

1. 입법취지

가. 종합적 부패방지법 제정의 필요성

'부패왕국'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어 버렸다. 말단 공무원에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총체적 부정부패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이 되어 왔다. 우리는 이 법안이 부패추방을 위한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으나 적어도 법제로서는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는 법안이라고 할 정도로 모든 부패예방과 추방의 제도와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 의해 입법화됨으로써 우리사회는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의 방향과 요강

부패방지법은 부패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한다.

공익정보제공자를 보호하자!

돈세탁규제없이 부패는 사라질 수 없다.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이 요구된다.

각종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사정기관이 요구된다.

2. 주요골자

제1장 총칙

부패방지를 위한 국가, 기업, 국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제2조, 제4조, 제5조), 그것이 비록 선언적 규정이라 할 지언정 부패추방이 우리 시대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국가, 기업, 국민의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동시에 부패추방 시민운동의 육성, 지원 조항을 둘으로서(제3조) 시민운동의 활성화로 부패추방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조직화됨으로써 부패추방이 정권의 일시적 구호에 그치거나 상층부의 주도에 의한 한계를 가지지 않도록 하였다.

제2장 공직자윤리 및 행동규범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매우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부패방지법(안)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자들이 부정부패에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여야 할지, 어떤 행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6가지로 구체화하여 단지 청렴하여야 한다는 당위적인 선언에 불과했던 국가공무원법 등의 기존 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제7조)

또한 공직자의 업무외 취업제한(제8조)과 업무외 소득제한(제9조) 규정을 둠으로써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에 전념하고 업무의 소득을 규제하여 소득원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였고 공직을 남용하여 금융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금융브로커의 역할을 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제10조)

공직자가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제적 이해와 연결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할 경우 그 직무로부터의 제척, 회피제도를 두어 직무의 공정한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부패의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그럼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도록 하였다.(제11조)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뇌물과 선물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선물, 향응, 숙박, 여행, 회원권제공등을 금지하고 다만 그 가치가 경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또 선물등의 제공이 금지되는 경우를 직무관련자로 한정하고 직무관련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선물등을 공직자 본인이 받는 경우 뿐 아니라 가족 등 관계인이 받는 경우에도 공직자 자신이 받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선물 등의 처리는 이를 신고한 후 시장가격으로 반환, 보상하도록 하였으며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선물 등을 뇌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제12조, 제13조)

뿐만 아니라, 공직자 상호간에도 선물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결혼, 전근 등의 경우에서의 의례적인 것만을 인정하였다.(제14조) 이러한 선물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선물에 관해서만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퇴직공직자의 유관기업에의 취업제한규정을 존치하였으며(제15조) 이에 더하여 부정부패로 파면되었거나 해임된 공직자는 10년간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가 부정을 저지른 후에도 버젓이 유관기업의 로비스트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봉쇄하도록 하였다.(제19조)

제3장 재산등록과 공개 및 심사

이 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등에 관한 규정들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종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비판되어온 사항들을 보완하는 선에서 손질하였다.

우선 재산등록의무자를 대폭 확대하였다(제20조). 특히 국세청, 관세청등 비리의 온상으로 의혹을 사온 기관의 경우에는 6급이상의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민원부서, 이권관련부서들의 경우 전 공무원의 등록이 바람직하나 업무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우선 6급이상으로 조정하였다.

등록의무재산(제21조)에 있어서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포함하여 부정재산의 은닉을 방지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의무재산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예컨대 기존의 일천만원 이상을 오백만원 이상으로 조정함)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의 공정과 심사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였으며(종래 5인에서 6인으로) 외부에서 선임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추방시민운동단체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다.(제27조)

등록재산에 대하여 허의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감사원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감사원은 조사결과 부패방지특별수사부에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등록재산의 실사와 처벌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제25조 7항, 8항)

등록의무자 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가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을 삭제하였다.(제31조)

제4장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이 장은 참여연대에서 이미 입법청원한 바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을 참고로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다. 부정과 부패가 공모되고 진행되는 한가운데 있던 사람이 고발해 음으로써 부패의 전모를 쉽게 파악하고 추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이와같이 부패추방의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내부고발자보호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음을 대단히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종래의 참여연대 안에 다만 그 적용대상에 있어 부패방지법(안)의 전체체계상 공직자와 공직자였던 자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제40조). 이것은 공직자가 아닌 사회단체 등의 구성원을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거부감이 적지 않을 것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정착되는 것을 보아가며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익정보제공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부파행위에의 가담 거절, 부폐정보의 은폐에 협조하지않는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제5장 돈세탁 규제

돈세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이번 두 대통령의 비자금 추적과정에서 무엇보다 절실히 제기되었다. 이른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 및 그 시행령 등에서도 돈세탁규제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지나친 비밀보장 조항 때문에 계좌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법이 입법화되면 그에 따라 적절하게 위 긴급재정명령과 시행령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의 돈세탁규제는 민주당의 자금세정규제법(안)과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민변) 안을 참고하였으나 민변의 안이 간명하고 본 법의 체계에 부합하여 민변의 안을 대체로 원용하였다. 다만 돈세탁의 대상범죄에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하였다.(제54조제5호)

제6장 부파행위의 처벌

공직자의 부정범죄에 관하여는 형법, 특가법의 규정이 주로 뇌물죄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의 직무범죄 이외의 다른 범죄를 직권을 이용하여 범한 때에는 2분의 1의 가중처벌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본 법의 본 장은 훌어져 있는 공직자의 부정범죄를 막라하고 일원화, 세분화시킴으로서 공직자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면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대만의 부정공무원처벌법과 싱가포르의 부폐방지기본법을 참고하였다. 동남아시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형량이 매우 높고 엄중함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제66조 내지 제68조에서는 공직자범죄를 구체화하였다. 이는 공직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사기, 직권남용, 뇌물 등의 범죄행위를 공직자범죄의 특수한 행위반가치를 고려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다. 이 조항들은 대만의 예에 따른 것인데 대만의 경우는 형량이 본법안의 2배에 달함을 참고로 언급한다. 특징적인 것은 뇌물죄를 유형화하여 직무에 위배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일반적인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 그 형량을 인상한 것이다.(제66조, 제67조)

주로 사정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전 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었으며(제

70조) 공직자에 대한 증뢰의 경우도 공직자와 동일한 형으로 별하도록 함으로서 부패의 미끼를 던지는 증뢰자에게 엄중한 처단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71조)

제72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직원에 부정의 증거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비호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제73조 내지 제80조에서는 본법의 제2장과 제3장에 위배한 경우의 벌칙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자 행동규범에 위반하거나 재산등록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벌하여 제2장과 제3장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81조에서는 본법상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의 처벌규정을 제82조와 제83조에서는 방조와 교사법을 벌하도록 하였는데 특히 교사법의 경우 형법의 특별규정으로서 정범의 실행착수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형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제86조에서는 이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제7장 불법재산의 몰수 등

공직자 부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의 몰수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부정범죄수익의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을 원용하였다. 다만 그 적용대상을 기존의 특수공직자범죄에서 본 법상의 범죄를 추가함으로서 확대하였다.(제6조8호)

제8장 부패방지특별수사부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고(제137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둠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고 검찰청법상의 검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제141조)

교묘한 부정범죄에 대한 효율적 수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과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청권을 부여하였고(제143, 144조) 특별수사부를 대통령 직속하에 두어 강력한 부패추방수사를 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권력비리사건에 관한 대통령의 입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수사부장 임명은 국회동의를 요하고(제140조)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의무화하였으며, 형사소송법상의 제정신청제도를 확대하였고(제150조) 탄핵을 명문화하였다.(제147조)

공직자 부패 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尹 泰 範

(서울대 강사, 행정학박사)

I. 서론

II. 한국 사회 부패의 환경과 특수성

1. 사익지향적 사회(Private Interest-Oriented Society)

사익지향적 행동양식은 곧 공익에 무감각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공익의 실현을 기본으로 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준수의식이 부족해진다고 할 것이다. 결국 공익이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고, 반대로 자신의 사익이 침해될 가능성 있는 경우에는 공익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 『ABS』 사회

자동차의 ABS 브레이크와 같은 고성능의 제동장치를 한국사회도 갖고 있다. 바로 『Administration-Business-Statesman (ABS)네트워크』를 말한다. 흔히 말하는 政-經-官의 유착을 의미한다. 어떤 학자는 이를 『철의 삼각구조(Iron Triangle)』라고도 한다. 자동차에서 브레이크 장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듯 정치인, 공직자, 그리고 기업가는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주체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경우 역설적으로 이들은 국가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다.

3. 부패에 대한 낮은 인식

우리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인식, 즉 저항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부정부패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법에 걸려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법에 의한 처벌을 통해서 부패행위자들은 마음에 없는 비자발적인 강제적 인정(부패행위에 대해서)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4. 부패 네트워크(Corruption Network)의 사회

문민정부 들어와서 변화되고 있는 한가지 현상은 기존의 물적 자원을 기초로 형성된 부패네트워크가 금융실명제 등을 비롯한 제반 통제제도의 강화(?)로 인하여 상당히 완화되고 대신에 이러한 네트워크가 인적인 관계에 기초한 인적 네트워크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인적관계에 기초하는 네트워크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체제적 부패(Systemic Corruption)

체제적 부패라고 할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즉 원인과 결과라는 두 측면에서 정리될 수 있다. 원인의 측면에서 볼 경우, 부패의 발생이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의식의 결여에서 혹은 우연히 기회가 되어서 발생하다기 보다는 사회적 경향 등이 부행위에 대하여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고, 또한 사회내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부패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부행위 자체가 여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 체제적 부패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의 체제적 부패는 어떤 학자가 말하는 것처럼 “고객-후원자 관계(client-patron network)” 혹은 “연고주의 혹은 족벌주의(nepotism)”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개의 경우 행정기관 내부의 공무원이나 관련 당사자들에 의해서 고발이 되며, 이로 인하여 설사 노출이 되고 경찰 혹은 검찰이 수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많은 경우 완벽한 수사가 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고마는 경향이 발견된다.

III. 공직자 부패방지관련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공직자부패 통제를 위한 법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통제수단을 유형화할 수 있다.

공직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

구 분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
특정적	공무원징계령 공무원범죄에관한 몰수특례법 공직자윤리법	I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포괄적	형법, 특별형법 형사소송법(재정신청)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III IV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령

IV.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구성체계

1. 특별법의 적용대상과 처벌강도 문제

부패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구성체계는 크게 두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논의될 수 있다. 즉 처벌의 대상, 종류 및 강도 등과 관련된 규정과 부폐조사 및 부폐공직자의 소추에 관한 특별

기구의 설치여부에 대한 것이다.

2. 독립적 수사기구 설치의 문제

기존 법체계의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없는 상태에서 특별법의 제정은 새로운 법 제정 이상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양자가 동시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보다 깊이 있게 고려해야 할 것은 다른 아님 기존 법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不正腐敗를 조사 내지는 기소할 수 있는 특별기구의 설치에 대한 논의인 것이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이나 수상과 같은 최고권력자의 반부패의지가 무엇보다도 강하고 이를 실현하는 특별기구가 조직상 대통령직속이지만 직무상으로 독립할 경우(우리나라의 監査院이 이론상 이에 해당한다) 상당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준기소절차』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검사가 소속하는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當否에 관한 裁定을 신청하여, 법원이 그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는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일명 『裁定申請制度』라고도 한다.

3.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문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이란 “과거에 조직의 구성원이었거나 또는 현재 그리한 사람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불법,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또는 국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거부나 항의표시를 하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하게 되고, 결국 외부에 그려한 문제를 호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고발”이라는 심리적으로 부담스런 느낌을 담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고발이라기보다는 외부에 대한 “정의의 선언”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닥칠 위협에 대한 외부에의 “구원의 호소”라고도 할 수 있다.

4. 돈세탁 방지의 문제

특히 최근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은행에서 돈세탁과정을 거친 것으로 드러나 돈세탁을 방지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적극 제기되고 있다. 한 야당은 이미 「부정자금유통거래방지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경실련등 시민단체들도 이런 돈세탁을 규제할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차단장치가 있는데도 이번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경우처럼 벼짓이 돈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현행 법규로는 돈세탁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의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법상의 처벌은 없다는 명점이 있다. 또 돈세탁과 관련없이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지만, 그것은 마약, 밀수, 뇌물 등 해당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여기다 실명제가 훌륭한 돈세탁방지장치지만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표쪼개기 수표바꾸기 등을 하는 경우는 실명제로도 막을 수가 없는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형법상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을 부탁하는 사람과 이를 실행한 금융기관직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V. 결론

앞에서 지금까지 논의하였지만, 어느 정도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特別法의 제정 필요성이 있는것이 사실이다. 단지 또 하나의 새로운 법의 제정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현재의 우리의 상황과 또한 이와 같은 법이 지니고 있는 상징성을 감안할때, 그 어느 때 보다도 제정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공직사회가 깨끗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부패방지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특별법과 부패공무원을 소추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제정에 대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먼저 기존의 다양하고 산만한 법체계에 대한 정비와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며, 앞서 논의한『재정신청제도』등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체계의 정비도 새로운 법의 제정 논의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많은 중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대중적인 임기응변적 접근으로 대응하여 상당히 갈등회피적인 정책을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응양식은 결국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문제를 일시적으로 안보이게 덮어두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니 보다 해로운 문제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정과 부패에 대한 대응은 어차피 구제도(Ancient Regime)에 대한 개혁 혹은 혁신의 성격을 수반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혁신적인 정책은 “또한 기존의 지배적인 가치체계”와 일정한 갈등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이 부정부패의 통제,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국가의 혁신과 발전이라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은 다분히 갈등지향적 혹은 갈등 촉진적인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가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펼쳐나갈 몇 가지 사업계획입니다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운동

1·24 토론회 법안시안 발표 이후의 활동 계획

96.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 본부 정책사업단

1. 「부패방지법안」의 완성

시민참여에 의한 부패방지법 성안

- 공직자, 직장인, 법조인, 관련전문가, 시민사회원로의 참여와 합의에 의한 법안 성안
(토론회 후속사업으로 각계 「부정방지법」 法制-成案위원의 선정)
- 부패방지법 세부분야 주제별 워크샵과 공청회의 개최 등을 통한 공론화
- 시민을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운동 해설자료의 발간

2.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위한 시민운동

시민이 주도하는 법제정운동: 부패방지법 제정 가두서명 추진

- 공직자도 함께하는 입법청원
(ex, 지방의회 의원등과의 연대에 의한 입법청원 서명 :
서울시 시의원→시민단체 네트워크등)
- 3월부터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가두서명운동 전개
- 맑은사회만들기 시민현장 사업과 연결시켜 각계각층 입법청원 서명운동

3.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시민의정참여

총선시기, 유권자운동과 15대 신임국회의원 연기명 법제정 추진

- 총선시 「부패방지법 제정-깨끗한 정치다짐」 후보자서명 촉구 유권자운동 전개
- 총선시 부정정치자금, 불법-탈법 선거에 대한 공익제보 활동 전개
- 15대 첫국회 개원시 10만인 입법청원 및 국회의원 연기명 「부정방지법」 제정추진
-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엽서보내기 운동 전개